

### ●해양경찰청공고제2020-62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른 고시의 타당성 검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기준일 정립(안 제4조)

나.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신설(안 별지3)

다. 자격시험 평가과목 개정에 따라 채점표 수정하고, 채점표 항목을 실제 시험순서와 동일하게 개선(안 별표1)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6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5일 까지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scubabumjin@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3) 팩스 : 032-835-2846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1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약외품제조업 (제926호)	(주)한국메디코	양*덕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67

####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1호

####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및 장소 : 2020. 5. 27.(수), 15시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종원
- 접수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dupda@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이수경 주무관 02-2640-1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